

3. 國土利用管理法 施行令中 改正令(案)

建設部公告 第19號

1. 개정이유

'78년 1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85년 8월부터 9차에 걸쳐 규제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전국토의 41.34%인 41,024.94km²에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제도적인 면에서는 6대도시에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고 임야거래에 대하여 임야매매증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허가제와 이 제도들을 연계 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운용면에서는 농지나 임야에 대한 중복규제로 현지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투기적인 거래는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6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었던 것을 개발제한구역은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규제구역내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축산·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나 농·어민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법인은 거래허가를 득할 수 없었던 것을 농·어민의 범위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과 당해 규제구역에 사무소를 두고 농·축산·임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경우, 규제구역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을 받은 경우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때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시·도지사와의 협의성립으로 토지거래허가·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한국은행,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을 추가함.

마. 투기적인 거래에 경매가 이용되지 않도록 경매를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함.

바. 규제구역 및 신고구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하여 1개 시·군·구의 범위내에서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